

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보조금 편성심의 조서

부서명	과목명	보조사업명	공모여부		보조사업자	2022년 예산 (본예산+추경)	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				조정액		심의조정액	사업내용	비고	
			구분	유형 (공모제외)			계	보조금			자부담	1차 (해당부서)	2차 (예산부서)			3차 (위원회)
								경정액	기정액	증감액						
계		2건				2,991,207	3,321,789	3,321,789	3,236,819	84,970	-	84,970	84,970	84,970		
농정과	민간자본사업보조 (자체재원)	과실 장기저장제 지원(산지유통센터, 과수농가 등)	공모대상		공모대상	40,000	44,970	44,970	40,000	4,970	-	4,970	4,970	4,970	과수재배농가 장기저장제 지원 33,000원*2,725.4㎡*50%	
건설교통과	운수업계보조금	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	공모제외	유형①	예천여객자동차㈜	2,951,207	3,276,819	3,276,819	3,196,819	80,000	-	80,000	80,000	80,000	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분 보전 - 인건비(60,000천원), 유류대(20,000천원)	

□ 공모제외 유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)

- * 유형①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

* 유형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(도비보조사업 포함)

* 유형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* 유형④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
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* 유형⑤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

* 유형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※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·군·구가 시행하는 시·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